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28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 안점점검, 안전도검사 → 안전점검
- 나. 전자제시대 세부 관리기준 신설(안 제18조)
- 다. 상위법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내용 삭제(안 제20조)
- 라. 별표 내용 및 별지 서식 중 제명·용어·상위법 개정사항 반영·미비점 보완 등
 -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2. 21. ~ 3. 13.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 03. 19.)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6)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점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7호나목 중 “제3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 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p>가. 관계 법규(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p>※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p>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 분대상 자 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p>※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p>	
기타교 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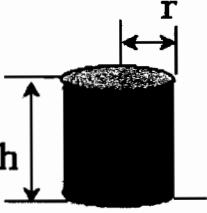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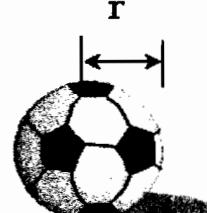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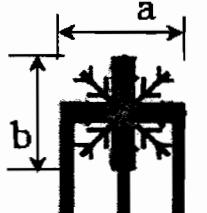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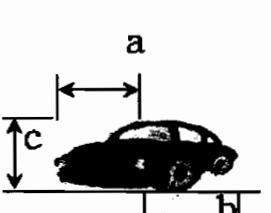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금액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원 1,500원
나. 타사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m²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원 2,000원
2. 삭제			
3. 돌출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원 1,000원 5,000원
4. 공연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이용 간판 가항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원 5,000원
6. 지주이용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금액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원 15,000원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원
다. 비행기 · 선박 양측면	대		10,000원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원
11. 선전탑	개		5,000원
12. 아치광고물	개		5,000원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원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원 1,5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원 2,000원
15. 벽 보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당 	5,000원
16. 전 단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매당 	5,000원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18. 입간판	개		4,000원

※ 허가 · 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 · 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 · 입체형 ·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원통)	(구)	(1면)	(입체모형)
			
$S = 2\pi rh$	$S = 4\pi r^2$	$S = (ab) \times 70\%$	$S = (2ac + 2bc) \times 70\%$

※참고 : S =면적의 합, $\pi=3.14$, r =반지름, h =높이

-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내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구 분	계 산 식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내부조명	$A \times \{1 + (B/C \times 0.5)\}$
C : 총 면적	외부조명	$A \times (1 + B/C)$

-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분의 1 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 (5)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 · 사용자재 · 위치 · 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 (6)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 (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 · 사용자재 · 위치 · 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별표 3]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 상 벽면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m ²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2,000원 45,000원 3,000원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개 개 m ²	•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원 22,000원 3,000원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개 m ²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원 22,000원 1,500원
4. 현수막게시시설	개 개 m ²	•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8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2,000원 45,000원 2,000원
5. 기타 광고물등		•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 안전점검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점검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면)	(입체모형)	(4면)
$S = (2ab) \times 70\%$	$S = (2\pi rh + \pi r^2) \times 70\%$	$S = (2ac) + (2bc)$

- (2) 그 외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2]의 (2)~(6)를 준용한다.
 (3) 구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안전점검 재신청시에 안전점검 수수료는 2분의1을 경감한다.

[별표 4]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신 규	업 소 당	15,000원
변 경	업 소 당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이 행 강 제 금 부 과 기 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 행 강 제 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m ² 미만	
1) 2.0m ² 이하	20만원
2) 2.1m ² 이상 3.0m ² 이하	30만원
3) 3.1m ² 이상 4.0m ² 이하	40만원
4)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9만원
나. 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1) 5.0m ² 이상 6.0m ² 이하	59만원
2)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9만원
3)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9만원
4)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9만원
5)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9만원
다. 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1) 10.0m ² 이상 12.0m ² 이하	119만원
2)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9만원
3)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9만원
4)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9만원
5)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9만원
라. 면적 20m ² 이상	200만원+면적 2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m ² 미만	
1) 2.0m ² 이하	20만원
2) 2.1m ² 이상 3.0m ² 이하	30만원
3) 3.1m ² 이상 4.0m ² 이하	40만원
4)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1) 5.0m ² 이상 6.0m ² 이하	59만원
2)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9만원
3)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9만원
4)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9만원
5)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1) 10.0m' 이상 12.0m' 이하	119만원
2) 12.1m' 이상 14.0m' 이하	139만원
3) 14.1m' 이상 16.0m' 이하	159만원
4) 16.1m' 이상 18.0m' 이하	179만원
5) 18.1m' 이상 20.0m'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20m'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m' 미만	
1) 0.5m' 이하	30만원
2) 0.6m' 이상 1.0m' 이하	35만원
3) 1.1m' 이상 2.0m' 이하	40만원
4) 2.1m' 이상 3.0m'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3m' 이상 5m' 미만	
1) 3.0m' 이상 3.5m' 이하	59만원
2) 3.6m' 이상 4.0m' 이하	69만원
3) 4.1m' 이상 4.5m' 이하	85만원
4) 4.6m' 이상 5.0m'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5m' 이상 10m' 미만	
1) 5.0m' 이상 6.0m' 이하	119만원
2) 6.1m' 이상 7.0m' 이하	139만원
3) 7.1m' 이상 8.0m' 이하	159만원
4) 8.1m' 이상 9.0m' 이하	179만원
5) 9.1m' 이상 10.0m'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10m'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m' 미만	
1) 2.0m' 이하	30만원
2) 2.1m' 이상 3.0m' 이하	35만원
3) 3.1m' 이상 4.0m' 이하	40만원
4) 4.1m' 이상 5.0m'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m' 이상 10m' 미만	
1) 5.0m' 이상 6.0m' 이하	59만원

2)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9만원
3)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9만원
4)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9만원
5)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1) 10.1m ² 이상 12.0m ² 이하	119만원
2)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9만원
3)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9만원
4)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9만원
5)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20m ² 이상 50m ² 미만	
1) 20.0m ² 이상 25.0m ² 이하	219만원
2) 25.1m ² 이상 30.0m ² 이하	239만원
3) 30.1m ² 이상 35.0m ² 이하	249만원
4) 35.1m ² 이상 40.0m ² 이하	269만원
5) 40.1m ² 이상 45.0m ² 이하	289만원
6) 45.1m ² 이상 50.0m ² 미만	299만원
마. 연면적 50m ²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1) 연면적 5m ² 이하	40만원
2)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50만원
3)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60만원
4) 연면적 15m ² 이상 20m ² 이하	70만원
5) 연면적 21m ² 이상	80만원 +연면적 2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2)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1) 연면적 5m ² 이하	40만원

2) 연면적 6m' 이상 10m' 이하	50만원	
3) 연면적 11m' 이상 15m' 이하	60만원	
4) 연면적 15m' 이상 20m' 이하	70만원	
5) 연면적 21m' 이상	80만원+연면적 21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나.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연면적 10m' 이하	200만원	
2) 연면적 11m' 이상	250만원+연면적 11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9.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 미만		
1) 1.0m' 이하	10만원	
2) 1.1m' 이상 2.0m' 이하	20만원	
3) 2.1m' 이상 3.0m'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m' 이상 5m' 미만		
1) 3.0m' 이상 4.0m' 이하	39만원	
2) 4.1m' 이상 5.0m'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5m' 이상	50만원+연면적 5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5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0.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계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m ² 미만		
- 0.5m ² 이하		14만원
- 0.6m ² 이상 0.8m ² 이하		24만원
- 0.9m ² 이상 1.0m ²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m ² 이상 2m ² 미만		
- 1.0m ² 이상 1.3m ² 이하		44만원
- 1.4m ² 이상 1.6m ² 이하		54만원
- 1.7m ² 이상 2.0m ²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m ² 이상 3m ² 미만		
- 2.0m ² 이상 2.3m ² 이하		85만원
- 2.4m ² 이상 2.6m ² 이하		110만원
- 2.7m ² 이상 3.0m ²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m ² 이상		130만원+연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의 0.5m ²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m ² 미만		
- 0.5m ² 이하		10만원
- 0.6m ² 이상 0.8m ² 이하		12만원
- 0.9m ² 이상 1.0m ²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m ² 이상 2m ² 미만		
- 1.0m ² 이상 1.3m ² 이하		29만원
- 1.4m ² 이상 1.6m ² 이하		39만원
- 1.7m ² 이상 2.0m ²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m ² 이상 3m ² 미만		

	- 2.0m' 이상 2.3m' 이하 - 2.4m' 이상 2.6m' 이하 - 2.7m' 이상 3.0m' 미만	59만원 69만원 79만원
라) 연면적 3m' 이상		80만원+연면적 3m' 초과하는 면적의 0.5m'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m' 미만	- 1.0m' 이하 - 1.1m' 이상 2.0m' 이하 - 2.1m' 이상 3.0m' 미만	10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m' 이상 5m' 미만	- 3.0m' 이상 3.7m' 이하 - 3.8m' 이상 4.4m' 이하 - 4.5m' 이상 5.0m' 미만	24만원 28만원 34만원
다) 면적 5m' 이상 10m' 미만	- 5.0m' 이상 6.0m' 이하 - 6.1m' 이상 8.0m' 이하 - 8.1m' 이상 10.0m' 미만	59만원 69만원 79만원
라) 면적 10m' 이상		80만원+연면적 10m'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7천원	
	- 21장 이상	장당 3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삭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욕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

[별지] 제1호서식]

① 번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⑧ 번	⑨ 비						
		② 성명	③ 상호	④ 업소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종류	⑧ 수량	⑨ 표기위	⑩ 표기위	⑪ 표기위	⑫ 표기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번호	⑱ 경사장
호명	일일명	월일명	소호	주소	전화번호	업소	광고내용	간격	기간	작자	용량	제작처	기기	설명	일자	일자	주소	고장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압인 또는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수수료
	1부	마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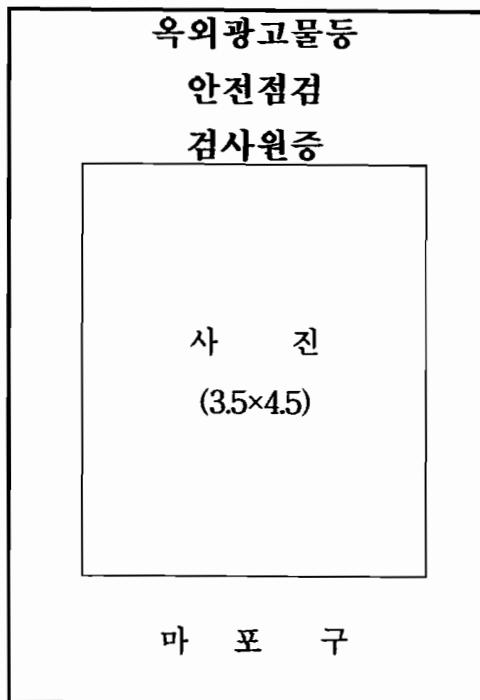
직인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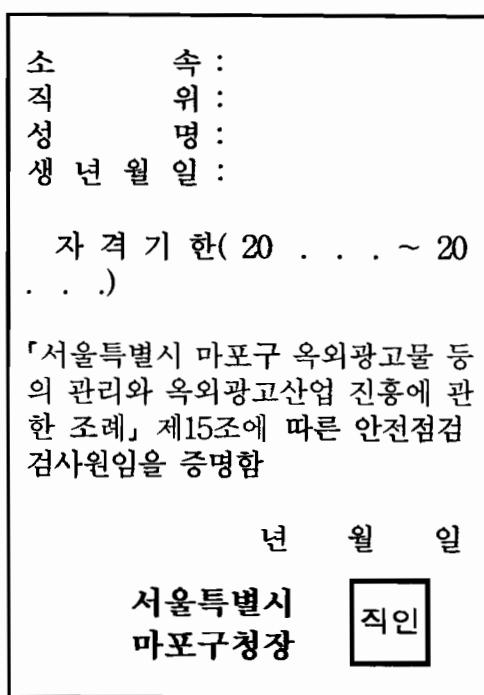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약인)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상태, 볼트·리벳·네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구성자재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용접상태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 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괴 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변동 후의 점검사항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우익 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⑩ 검사 구 분	⑪ 검사 일 자	⑫ 검사 결 과	⑬ 소 속	⑭ 적 속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④ 업 소	⑤ 주 소											
100-00000000	2023.01.01	김철수	주식회사	한국광고	2023-01-01 (100-00000000)	판권	창고	100x100mm	구별	2023-01-01	적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작	김철수	광고물 등록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8호서식]

제3장 광고물 관리대장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장대리 관리를 위한 광고물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Redacted]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마포구 체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고물관리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 ③ (생 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 략)

----- 아니할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

-----.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5조의2</u>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u>광고업자</u> 에 대해서 우수 <u>광고업자</u> 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법 제5조의2----- ----- ----- ----- 광고사업자----- -- 광고사업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 <u>자격 기본법</u> 」 제17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 광고 · 건축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 「 <u>자격 기본법</u> 」 제19조----- ----- ----- ----- -----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안전점검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 안전점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자계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계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계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계시대에는 같은 업

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생 략)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삭 제>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 물동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옥외 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 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옥외광고사업 -----
----- 교육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옥외광
고사업 -----

- 옥외광고사업 -----

관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생 략)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옥외광고사업

-----.

1. · 2. (현행과 같음)

3. 「예비군법」 -----

4.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

----- 옥외광고사업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

----- 옥외광고사업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옥외광고사업 -----

제23조(수수료)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옥외

광고사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 가. (생 략)
-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생 략)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제1항 관련)

-----.

1. ~ 6. (현행과 같음)
7. -----

- 가. (현행과 같음)
- 나. ----- 제4조제1항제9호

[별표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제1항 관련)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고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고
가. 관계법규 (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생략)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회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생략)		가. 관계법규 (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회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생략)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생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개정 시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현행과 같음)	법,령,조례 제·개정 시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생략)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생략)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현행과 같음)	

[별표 2]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기준	수수료금액
1. 가로형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 • 20제곱미 터 이하 • 20제곱미 터 초과시 1제 곱미터당 가 산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시조제제조제 형제호에 의한 벽면 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개		
2. 세로형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 	3,000원 1,500원
(생 략)			
4. 공연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간 판 가항과 같 음 	
(생 략)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 는 것	개	(생 략)	
(생 략)			
12. 아취광고물	개		
(생 략)			

[별표 3]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기준	수수료금액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 • 20제곱미 터 이하 • 20제곱미 터 초과시 1제 곱미터당 가 산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타사광고	개		
2. 삭제			
(현행과 같음)			
4. 공연간판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이용 간판 가항과 같 음 	
(현행과 같음)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 는 것	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아치광고물	개		
(현행과 같음)			
18. 입간판	개		4,000원

[별표 3]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 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영 제15조제4호),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영 제23조제2항)		(생 략)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영 제23조제3항)		(생 략)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생 략)
- (3) 구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안전도검사 재신청시에 안전점검 수수료는 2분의1을 경감한다.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 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현행과 같음)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현행과 같음)	

* 안전점검 수수료 산정방법

- (1) 안전점검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현행과 같음)
- (3) 구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안전점검 재신청시에 안전점검 수수료는 2분의1을 경감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생 략)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4]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현행과 같음)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생략)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 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생략)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10.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및 공 연간판	(현행과 같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 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현행과 같음)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나.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0.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 고물등에 준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 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1회 위반한 경우 나. 연2회 위반한 경우 다. 연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생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
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3.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현행과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

<p>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p> <p>[별지 제4호서식]</p> <p>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생략)</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p>	<p>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p> <p>[별지 제4호서식]</p> <p>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현행과 같음)</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p>
<p>[별지 제5호서식]</p> <p>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생략)</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p>	<p>[별지 제5호서식]</p> <p>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p>
<p>[별지 제6호서식]</p> <p>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생략)</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별지 제6호서식]</p> <p>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현행과 같음)</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별지 제11호서식]</p> <p>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생략)</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별지 제11호서식]</p> <p>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현행과 같음)</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별지 제12호서식]</p> <p>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p> <p>[별지 제13호서식]</p> <p>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생략)</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별지 제12호서식]</p> <p>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p> <p>[별지 제13호서식]</p> <p>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별지 제14호서식]</p> <p>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생략)</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별지 제14호서식]</p> <p>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현행과 같음)</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별지 제15호서식]</p> <p>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생략)</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별지 제15호서식]</p> <p>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현행과 같음)</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정우열
연락처	02-3153-9453